

고 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-69호

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계획 수립(예정)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장을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10일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
1. 개발행위제한 사유

- 강남구 정비계획 수립 예정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 및 투기행위(분양권 늘리기 등) 유입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함

2. 개발행위제한 내용

가. 제한지역

연 번	제 한 지 역			아파트명칭	비 고
	동 명	지 번	면적(㎡)		
1	대치동	506번지 일대	79,269.1	선경아파트	연장(2년)

나. 제한대상 행위 : 분양권을 늘리려는 행위

-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(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) 또는 공작물의 설치
- 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

다. 제한 예외대상

- 제한대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라. 제한기간 : 고시일로부터 2년 (2026.04.01. ~ 2028.04.01.)

(※ 강남구 고시 제2023-64호 완료일로부터 2년 연장)

마. 관련도면 : 지형도면 참고

(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)

바. 기타사항 문의 :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93)

■ 지형도면
 - 대치 선경아파트

